

전기통신 기본법 및 공중 전기통신 사업법

- I. 통신사업 경쟁도입을 위한 제도정비 방향
 - 1. 통신사업 경쟁체제 및 참여요건
 - 2. 기간통신 사업자의 연구·개발 강화
 - 3. 통신 위원회의 설립
 - 4. 공정 경쟁의 확립을 위한 제도 도입
 - 5. 이용자의 권익 보호
- II. 전기통신 기본법 주요 내용
- III. 전기통신 사업법 주요 내용

통신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인한 통신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해 7월 통신사업 구조조정 계획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이를 체계적으로 수용하기에는 법체계상 한계가 있어 전면 개정이 불가피했던 바, 이에 상응하는 전기통신 기본법 및 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지난 4월 13일에 입법 예고하고 이번 임시국회에 상정되어 통과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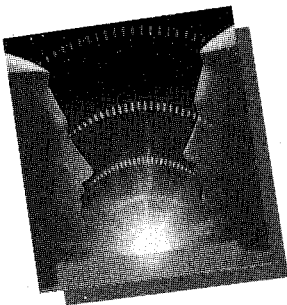
당 협회는 이에 관한 설명회를 지난 5월 9일 프라자 호텔에서 갖은 바, 양법에 대한 주요 골자를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으며 본지는 이날 설명되었던 「전기통신 경쟁 도입을 위한 제도정비 방향」과 아울러 양법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게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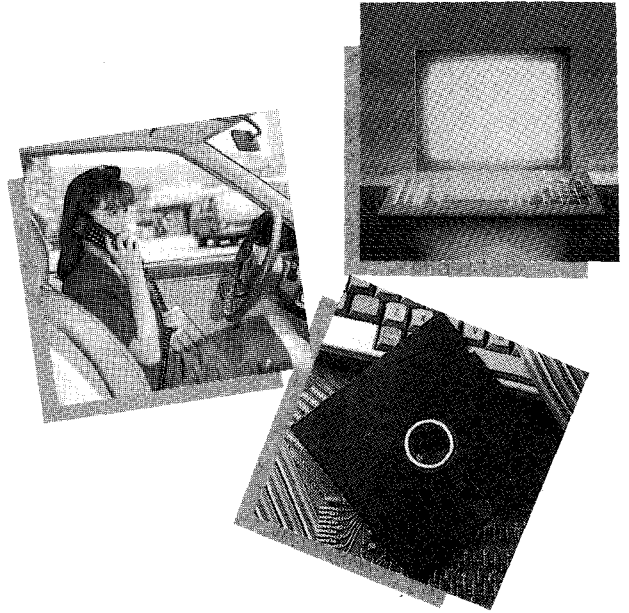
I. 통신사업 경쟁도입을 위한 제도정비 방향

1. 통신사업 경쟁체제 및 참여요건

가. 통신사업 체제 개편 방향

정부는 70년대 이전 직영하였던 공중 전기통신 사업을 80년대에 이르러 한국전기통신공사를 설립(82년)하고 독점적인 경영을 했었지만, 90년대에는 시장경제 원리를 도입하여 민간의 활력과 창의력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사업경영 개선과 대민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통신 개방을 도모하기 위한 뒷받침으로 관계 법령을 개정한다.





나. 경쟁 기본 구도

대규모 설비가 소요되는 시내 전화사업을 독점 체제를 유지하고, 비교적 투자 규모가 작으며 기술 변화가 급속한 장거리, 국제, 이동 통신의 분야는 점진적으로 경쟁을 허용할 것이다. 또 다양한 서비스 개발이 요구되는 부가 통신 분야는 조기 경쟁 체제로 구축한다.

다. 통신사업 경쟁체제

1) 사업의 구분

현 행	개 정	
공중전기통신사업	기간통신사업	일반통신사업 특정통신사업
정보통신역무제공업	부가통신사업	

2) 사업별 경쟁체제

일반 통신사업에서 시내전화 서비스는 한국통신이 계속 독점 제공하고, 국제전화 서비스를 한국통신 외에 데이터 통신(주)도 복점 제공할 수 있게 하여 본격적인 경쟁 체제를 구축하며, 시외전화 서비스 산업은 국제 분야의 경쟁 성과와 전국 단일 통화권 추진을 고려하면서 추후 검토하기로 한다.

특정 통신사업에서 무선전화 사업은 전국을 사업 지역으로 하는 신규 사업자를 허가하여 복점체제를 마련하고, 무선통신 등 기타 특정통신 분야는 이동통신(주), 향만전화(주) 외에 신규 사업자를 지역별로 새로 허가하여 지역별 복점체제에 의한 서비스 제공을 한다.

부가 통신사업은 전면 자유경쟁 체제가 도입된다.

3) 사업별 참여요건

일반 통신사업은 지정에 의해 경영이 가능하고, 특정인의 최대 소유 비율이 1/10 미만으로 외국인의 주식 소유를 금지한다. 일반통신 사업자인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은 외국인이 될 수 없으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한없이 주식소유가 가능하다.

전기통신설비(단말설치 제외) 제조업체는 대주주가 될 수 없지만 3/100 미만까지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일반통신 사업자는 다른 일반통신 사업자의 주식 소유를 금지하고,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에 대한 소유 비율은 제한이 없다.

특정통신 사업은 허가를 득해야 참여 가능하고, 특정인의 최대 소유 비율은 1/3 미만이어야 한다. 외국인의 주식 소유는 합계가 1/3 미만의 범위내에서 참여 가능하지만 대주주 또는 특정통신 사업자인 법인의 대표자가 될 수 없다. 단 임원의 경우는 1/3 미만으로 제한한다.

전기통신설비 제조업체는 대주주가 될 수 없고 10/100 미만의 주식 소유가 가능하지만 특정통신 사업자가 다른 특정통신 사업자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정부, 정부투자기관, 정부재투자 기관 등 역시 대주주를 금지하고 10/100 미만의 주식 소유만 가능하다.

부가 통신사업은 등록만 하면 경영할 수 있는데



법인외에 개인도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현재 50% 까지 허용되고 있는 외국인의 참여 범위는 단계적으로 전면 허용한다.

라. 기간통신 사업의 허가(지정) 방안

1) 사업참가 신청방법

사업참여 희망자가 콘소시움(Consortium, 투자집단)을 구성하여 공동 신청하는 방법과 사업참여 희망자의 개별신청을 받아 정부가 대주주와 소주주를 선정하여 콘소시움을 구성하는 방법이 있으나, 사업참여 희망자의 적극적인 경영 의욕을 살리면서 콘소시움 구성에 따른 정부에 대한 의혹의 여지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사업참여 희망자가 대주주 중심으로 스스로 콘소시움을 구성하고 공동신청하는 방법으로 추진할 것이다.

2) 사업참여 제한

통신기기 제조업의 기반을 갖추지 않은 기존 사업자와의 공정 경쟁 여건을 확립하고 통신기기 제조업체 상호간 공정경쟁 여건을 조성, 일부 통신기기 제조업의 취약한 기반에 따라 일부 업체에 의해 국내 서비스 시장이 지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신기기(단말설치 제외) 제조업체는 소주주로서만 참여토록 하되 아래와 같이 소유제한 비율을 둔다.

- 일반통신 사업자: 3/100 미만
- 특정통신 사업자: 10/100 미만

3) 최적격자 선정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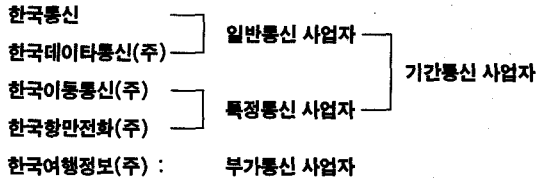
사업별 특성을 고려한 심사 기준을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 심사 기준을 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지정) 신청 공고시에 발표하며, 심사 기준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확보한 후 사업경영 최적격자를 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것이다.

4) 허가(지정) 소요시간

법 개정이 완료된 후 약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 기존 공중통신 사업자의 지위변동

공중통신 사업자의 새로운 구분



2. 기간통신사업자의 연구·개발 강화

가. 배경

통신은 산업의 기본구조로서 연구·개발이 모든 산업의 경쟁력 증진을 위한 필수적 요소이므로 첨단 산업인 정보·통신 산업의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통신서비스 및 통신기기 제조업의 대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이제까지 한국통신에만 부여해오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출연 의무를 모든 기간통신 사업자에게 부과하여 연구·개발을 강화하도록 한다.

나. 주요 내용

기간통신 사업자는 연구·개발에 매년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자·출연해야 한다.

- 일반통신 사업자
 - 매출액 1조원 초과 사업자 : 4/100 이상
 - 매출액 1조원 이하 사업자 : 3/100 이상
- 특정통신 사업자 : 2/100 이상

연구·개발비중 일정금액을 전기통신관련 공동기술과 통신방식 등에 관한 연구·개발을 수행(국책)하는 연구기관 및 단체에 투자·출연해야 한다.

3. 통신 위원회 설립

가. 필요성

독점에서 경쟁 체제로 이행함에 따라 분야별 다수



의 신규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게 되어, 다수 콘소시움의 참여 신청시에 최적적 사업자 선정을 위한 선정기준의 작성과 사업자 선정시에 통신 위원회가 심의를 하도록 하여 전문가의 객관적 의견 수렴과 광범위한 여론 반응을 모색, 다수 사업자간의 공정 경쟁을 확보하는 한편 사업자간 분쟁 조정과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설립이 필요하게 된다.

나. 통신 위원회의 설립

체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을 6인(1인은 결정적 1급에 상당하며 상임이고 그외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여 총 7인이 위원회를 구성된다. 공정경쟁 여건을 확립하고 분쟁 조정과 중재를 신속화, 전문화함으로써 건전한 경쟁 체제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아래와 같은 사항들의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 사업자의 신규 지정·허가
- 기간통신 사업자의 연구·개발과 투자 출연
- 공정경쟁 확보
 - 전기통신 서비스 제공조직의 분리 또는 상호 내부보조 제한
 - 전기통신설비 공개 조건의 공시
 - 사업자간의 설비 제공
 - 전기통신 설비의 상호 접속 또는 공동 사용
- 소비자 보호
 - 요금 이외의 제기 등 소비자 분쟁
 - 불공정 협정의 변경
 - 불공정 이용 약관 및 정관의 변경

4. 공정 경쟁의 확립을 위한 제도 도입

가. 필요성

경쟁 체제로의 이행에 따라 많은 신규 산업자의 참여가 예상되고 이에 적합하도록 사업자간에 공정 경쟁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나. 공정경쟁 제도

통일 회계제도의 도입으로 통신 사업자들의 회계 처리를 통일, 공정 경쟁 확보를 꾀하고 합리적인 요금의 결정과 조정을 도모한다.

일반 통신사업자의 부가통신사업 참여시 회계 또는 조직을 분리 운영하여 상호 내부보조를 제한하고 해당되는 전기통신 서비스의 제공조직을 분리한다.

전기통신설비 공개 조건의 공시는 통신회선 및 망 서비스의 공정한 이용과 거래를 보장할 수 있게 하며, 이를 위해 기간 통신 사업자는 접속 관련 기술 기준, 접속조건, 이용 및 공급조건, 요금원칙, 망관련 정보 등을 공개해야 한다.

5. 이용자의 권익보호

가. 과징금제도 도입

통신사업자에 대하여 그 지정, 허가, 등록을 취소 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 그에 앞서 해당 사업자와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고 그 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초래하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같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한다.

나. 민원처리 기구 설치·운영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전기통신 사업자에게 민원처리 기구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즉시 처리하고 피해 보상 등을 의무화 한다.

다. 이용약관 등의 변경

사회, 경제적 사정의 변동에 따라 통신 사업자의 요금 및 이용 약관이 부적합할 경우 적절한 변경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다.

라. 피해보상 강화

종전 3일 이상 통신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였을 경우에 배상토록 하였는데 이를 1일 이상으로 변경한다.

II. 전기통신 기본법 주요 내용

1. 개정배경

- 통신기술의 혁신과 서비스 수요의 고도화, 다양화 등 통신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
- 통신사업 경쟁체제에 적합한 법체제 정비
- 통신사업 구조조정 정책의 효율적 집행수단 마련

2. 기본방향

- 전기통신의 진흥에 관한 사항 보완
- 전기통신의 기본체제 및 설비관리에 관한 사항 보완
- 전기통신의 표준화 추진과 한국통신기술협회의 설립
- 국가통신 조정 위원회를 폐지하고, 통신 위원회를 설립

3. 신·구법 체계 비교

현행법	개정(안)
제1장 총 칙 -목적, 정의, 전기통신 기본계획 수립등	제1장 총 칙 -목적, 정의, 전기통신 기본계획, 사업자 구분 등
제2장 공중 전기통신 -공중 전기통신 사업의 경영 -정보통신 의무제 공업의 경영	제2장 전기통신의 진흥 -시행 계획의 수립 -연구·개발투자 등
제3장 자가 전기통신 -자가 전기통신 설비의 설치 -목적의 사용 제한 -비상시 통신의 확보	제3장 전기통신 설비 -사업용 전기통신 설비 -자가 전기통신 설비 -전기통신 설비의 기술기준 등 -전기통신 설비의 통합 등
제4장 전기통신 기술의 진흥	제4장 전기통신 기차재의관리

-기술진흥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연구기관 등의 육성 -기술지도	-형식승인 -형식승인의 유효기간
제5장 전기통신 설비의 기술 기준 등 -기술기준 -기술기준 위반시 시정명령 등	제5장 통신위원회 -통신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기능 등
제6장 전기통신망의 관리 등 -전기통신 설비 등의 통합운영 -국가통신 조정위원회	제6장 보 칙
제7장 보 칙	제7장 별 칙
제8장 별 칙	
본문 44조	본문 52조 부칙 5조

4. 주요 개정내용

- 전기통신 사업자의 구분(제7조)
 - 기간 통신사업자 : 전기통신 회선 설비를 설치·보유하고 전기통신 서비스 제공
 - 일반 통신사업자 : 전신, 전화 등 기본통신 서비스 제공(한국통신, 데이콤)
 - 특정 통신사업자 : 기술적 또는 지역적으로 제한된 통신 서비스 제공(이동통신, 향만통신)
 - 부가 통신사업자 : 전기통신 회선설비를 대여받아 전기통신 서비스 제공
- 전기통신 사업법으로의 이관(현행법 제7조 내지 제13조)
 - 전기통신 사업경영의 절차와 요건 규정
 - 전기통신 사업자간 업무영역 조정 및 상호 접속에 관한 규정
 - 전기통신 서비스 제공의 의무 및 요금 결정의 원칙 규정
- 전기통신 연구개발 투자·출연(제13조)
 - 기간통신 사업자에게 연구·개발 등을 위해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투자·출연하도록 하고,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매출액의 일정비율

- 일반통신 사업자중 매출액이 1조원 초과자 : 4/100 이상
- 일반통신 사업자중 매출액이 1조원 이하자 : 3/100 이상
- 특정통신 사업자 : 2/100 이상

-또한 기간통신 사업자에게 연구·개발비중 일정액을 전기통신 관련 공통기술 등을 연구·개발하는 연구기관·단체에 투자·출연하도록 하고 일정액은 통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신부 장관이 정하도록 한다.

○ 전기통신 설비의 관리에 관한 규정 보완 (제17조 내지 제19조)

-사업용 전기통신 설비의 설치 : 기간통신 사업자(부가통신 사업자는 일부만 가능 : 체신부령)

-기간통신 사업자간 설비 제공

- 사업자간 상호 협정에 의한다.
- 협정이 성립하지 않을 시 체신부 장관이 협정체결 명령
- 명령 후 금액 등의 사항에 대해 협의를 할 수 없을 때 통신 위원회에 재정 신청

○ 전기통신이 표준화 추진과 한국통신기술협회 설립 (제29조, 제30조)

-체신부장관은 표준화를 추진하고 사업자 또는 통신 기자재 생산업자에게 권고

-한국통신기술협회

- 전기통신의 표준화 추진담당
- 현 한국통신기술협회의 재산과 권리·의무 승계

○ 통신 위원회의 설치 (제5장)

-설치 : 전기통신 사업자간 적정 경쟁의 확보, 전기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보호 및 중요 통신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체신부에 설치.

-구 성

-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7인으로 구성
- 위원장 : 체신부 장관
- 위원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위원중 1인은 상임, 별정직 1급 상당)

-위원 자격

- 전기통신에 관하여 실무 경험이 있는 2급 이상의 공무원직에 있던 자
-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직에 10년이상 있던 자
- 법률학·전자공학 또는 통신공학을 전공한 자로서 대학 등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있던 자 등

-임기 : 3년, 연임 가능

-신분 보장

- 금고이상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 심신 쇠약으로 인하여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지 않는 한 면직되지 않는다.

-기 능

- 연구·개발 투자에 관한 사항
- 기간통신 사업자간의 설비 제공에 관한 사항
- 사업자 지정과 허가에 관한 사항
- 전기통신 설비의 상호 접속 및 공동 사용에 관한 사항
- 기간통신 사업자의 조직의 분리, 내부보조 제한, 정보의 공개 및 협정내용, 이용약관·정관의 변경명령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III. 전기통신 사업법 주요내용

1. 개정배경

- 통신사업 구조 조정(90. 7)에 따른 통신사업 체제에 재편성
- 통신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사업법 체제의 정비

2. 기본방향

- 부분 개정이 아닌 전면 개정(본문 84개 조문으로 구성)
 - 현행법 본문 123개 조문중 삭제 67, 개정 56, 신설 28개 조문
- 전기통신사업의 공공성 확보와 사업경영의 자율성 보장
- 전기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보호

3. 신·구법 체계 비교

(구) 공중 전기통신 사업법	(신) 전기통신 사업법
제1장 총 칙 - 목적·정의·타법과의 관계 등	제1장 총 칙 - 목적·정의·이용차별 금지
제2장 공중통신 의무 - 전보·전화 - 위탁 자동집단 전화 - 전신·정보통신 - 무선호출·전용 및 대여	제2장 전기통신사업 - 제1절 총칙·사업 분류 - 제2절 일반통신사업 - 제3절 특정통신사업 - 제4절 부가통신사업
제3장 요금·수수료 및 설비 - 요금승인 - 요금감면 등	제3장 전기통신 업무 - 이용 약관의 인가·변경·공시 - 사업자간 상호 접속·공동 사용 - 이용자 보호·공정 경쟁
제4장 공중통신 설비의 건설·보전	제4장 전기통신 설비의 건설·보전
제4장의2 정보통신 의무제 공업	(제2장 제4절에 수용)

제5장 전화 소개업	(삭 제)
제6장 보 칙	제5장 보 칙
제7장 벌 칙	제6장 벌 칙

4. 주요 개정내용

가. 새로운 통신사업 분류 (제4조)

현 행	개 정	
공중 전기통신사업	기간통신사업	일반통신사업 특정통신사업
정보통신역무제공업	부가통신사업	

- 일반 통신사업 : 전기통신 회선 설비를 설치·보유하고 특정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서비스 이외의 전기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특정 통신사업 : 전기통신 회선 설비를 설치·보유하고 기술적 또는 지역적으로 제한된 전기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부가 통신사업 : 기간통신 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 회선을 임차하여 전기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전기통신 사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는 사업자별로 시행 규칙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4조 제5항)

<시행규칙으로 정할 서비스 예시>

일반통신사업자	특정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
○ 전 화	○ 무선전화	○ DB/DP
○ 전 신	○ 무선호출	- 정보은행 및 데이터처리 서비스
○ 전 용 (대여 포함)	○ 무선데이터	○ 데이터의 축적 전송 및 처리 전송
○ 기 타 (특정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제외)	○ 항만통신 (전화, 데이터)	- 전자사서함(E-Mail), 거래 정보교환(EDI), 메시지 교환(MHS), 컴퓨터 예약 서비스(CRS)
	○ 공항통신 (전화, 데이터)	○ 기타 화상회의 서비스 등

나. 사업자 관리제도

○ 사업 참여 절차 및 기준

구분	기간통신사업		부가통신사업
	일반통신사업	특정통신사업	
참여절차	지정(5조) ○ 지정공고 ○ 대상자 선정 ○ 통신 위원회 심의 ○ 지정(지정서 교부)	허가(15조) ○ 허가 공고 ○ 희망자 신청 ○ 통신 위원회 심의 ○ 허가(허가증 교부)	등록(20조) ○ 희망자 신청 ○ 등록(등록증 교부)
참여기준	<5조> ○ 통신사업 발전 가능성 ○ 공익 증진	<16조> ○ 이용자 수요충족 ○ 설비 과잉 방지 ○ 자원·기술 보유 ○ 전기통신 기본계획 적합	<20조> ○ 재정 능력 보유 ○ 제공 설비 보유 ○ 기술 능력 보유
결격사유	<6조> ○ 전기통신 법령 위반 ○ 외국인 주식소유, 임원·대표자 금지 ○ 다른 일반통신 사업자 주식 소유 금지 ○ 특정한 소유 제한(1/10 이내) ○ 제조업체 대주주 참여, 3/100 이상 소유 금지 ○ 정부·지자체 소유 유제한 없음	<17조> ○ 전기통신 법령 위반 ○ 외국인 임원 3/10 이상, 외국인 대표자 금지 ○ 다른 특정통신 사업자 주식 소유 금지 ○ 특정한·외국인 소유 제한(1/3 이내) ○ 제조업체 대주주 참여, 10/100 이상 소유 금지 ○ 정부·자치단체·정부 투자기관 대주주 참여 10/100 이상 소유 금지	<23조> ○ 전기통신 법령 위반 ○ 특정한·외국인 참여 제한 없음

- 허가시 최적격자 선정 기준을 사전 공고할 수 있도록 함 (제15조)
- 지정 또는 허가시 조건 부과 가능 (제5조, 제15조)
- 사업 개시 후,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 지정·허가·등록 취소, 영업 정지

○ 사업 참여 후의 사업자 관리

- 지정·허가·등록의 취소, 영업 정지

구분	기간통신사업		부가통신사업
	일반통신사업	특정통신사업	
사유	<14조> ○ 허위·부정에 의해 지정받은 경우 ○ 지정 기간내 사업을 개시하지 못한 경우 ○ 전기통신 관련 법령 위반시 ○ 결격사유에 해당한 때	<19조> ○ 좌 동 ○ 좌 동 ○ 좌 동 ○ 좌 동	<27조> ○ 좌 동 ○ 좌 동 ○ 좌 동 ○ 좌 동
내용	지정의 취소, 영업 정지	허가의 취소, 영업 정지	등록의 취소, 영업 정지
취소 효과	3년내 사업 참여 금지	좌 동	2년내 사업 참여 금지

* 영업 정지가 이용자의 심한 불편 초래, 공익 저해시 : 과징금 1,000만원 이하 부과(61조)

- 기타 일반적 관리사항

구분	기간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
	일반통신사업자	특정통신사업자	
○ 사업 허용 후의 변경사항 관리	변경 지정(9조)	변경 허가(19조)	변경 등록(21조)
○ 다른 사업 겸업, 해의 사업 영위	승인(10조)	좌동(19조)	제한 없음
○ 업무위탁	승인(11조)	좌동(19조)	제한 없음
○ 사업의 양도·양수, 법인 합병	승인(12조)	허가(19조)	등록(24조)
○ 사업의 휴사·폐지, 법인 해산	허가(13조)	허가(19조)	신고(26조)
○ 국제 할당·계약 체결	승인(56조)	좌동(56조)	좌동(56조)

다. 전기통신 이용 및 경쟁 여건 확보

○ 이용 약관 및 요금 (제28조 내지 제30조)

- 기간통신 사업자의 이용 약관(요금포함)은 인가사항

* 전신전화 요금은 물가, 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예외 : 인가 요금, 국제 요금, 가인가 요금)

- 부가통신 사업자의 이용 약관(요금 포함)은 신고 사항

○ 적정 경쟁 확보 (제35조)

- 기간통신 사업자간 또는 기간통신 사업자

와 부가통신 사업자간 적정 경쟁조치 필요 시 통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공 조직의 분리, 내부 보조의 제한, 정보의 공개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라. 사업자의 전기통신 설비 건설 및 유지 (제37조 내지 제47조)

- 토지 등의 사용, 수저 선로의 보호, 전기통신 설비의 보호 등 현행규정 수용(주로 기간통신 사업자에게 적용)

마. 이용자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 통신 사업자의 서비스 제공 의무(안 제3조)
- 민원 처리 기구 설치·운영 등 이용자 보호 조치 강구(제31조)
- 통신비밀 보호(제50조)
- 각종 서비스 미제공 등에 따른 손해 배상 및 토지 사용 등에 따른 손실보상 등(제63조 내지 제70조)

바. 벌칙 규정의 보완·강화

- 사업 경영권 침해죄
 - 지정없이 일반특정 사업 경영 :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 이하
 - 허가없이 특정통신 사업 경영 : 징역 3년, 벌금 1,500만원 이하
 - 주식 또는 지분 초과 보유 : 징역 1년, 벌금 1,000만원 이하
- 적정경쟁조치위반죄 : 징역 2년, 벌금 1,000만원 이하
- 지정·허가·승인 사항 및 명령 등 위반죄 : 징역 2년, 벌금 200만원 이하
- 각종 신고·공시·보고 등 해태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양벌죄 :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종업원 등이 벌칙을 위반한 때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개인에 벌금형 병과

사. 기존 공중통신 사업자에 대한 경과 조치(부칙 제7조)

- 기간통신 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주요 주주에 대한 조치

- 한국전기통신공사 : 정부 51% 이상 소유
- 한국데이터통신(주)

- 통신공사 소유주식 : 1년내 정부에 대한 무상 증여 등의 방법으로 주식 전액 회수
- 제조업체 소유주식 : 초과 소유 인정. 다만, 3% 미만인 될 때까지 추가 출자 금지

- 한국이동통신(주) : 한국전기통신공사 51% 이상 소유 인정
- 한국항만전화(주) : 한국전기통신공사 초과 소유 인정

- 기간통신 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사업 권 등에 대한 조치

- 2월 이내에 현재 수행중인 전기통신 사업 내용을 신고토록 하고 1월 이내에 지정서 또는 허가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토록 한다.
- 3월 이내에 기존 이용 약관 및 사업자간 협정을 개정하여 일괄 신청토록 하고 1월 이내에 이를 인가토록 한다.

아. 법 시행 후 5년간 경쟁 도입 형태(부칙 제8조)

구 분		경쟁도입내용
일반 통신 사업	시 내	한국통신 독점
	국 제	한국통신과 데이터통신(주)가 제공
	장거리	필요시 한국통신 이외에 1사업자 지정
특정통신사업		○ 무선전화 사업은 전국 독점 ○ 무선호출 사업 등은 필요시 2개 이내 추가 허가

- 법 시행 3년후 부터 필요한 경우에는 통신 사업 구조 재검토 가능